

의안번호	2212761
의 퇴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5.11.6.
추계번호	25D4880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기각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시 이를 통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,800만원, 2031년 1억 2,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억 9,700만원(연평균 9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잠정조치 청구 기각 및 잠정조치 결정에 따른 통지	78	88	99	110	122	497	9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제4항	검사는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u>사법경찰관</u> 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	의무규정
2	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제5항	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<u>사법경찰관</u> ,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,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제4항	법원은 잠정조치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, <u>사법경찰관</u> , 피해자등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취소,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제4항	○	—
2	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제5항	○	—
3	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제4항	×	잠정조치의 취소, 기간의 연장, 종류의 변경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통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의 임시조치 시 통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스톱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요청 기각 건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건수를 합한 뒤 잠정조치 통지 1건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

- 개정안에 따르면,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통지대상에 추가되므로 스톱킹범죄 사건 1건당 통지 건수는 1건으로 가정함
- 법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(우편송달)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연도별 스톱킹범죄 발생 건수, 잠정조치 건수 및 비율: 2022~2024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건수
잠정조치 청구요청 기각 건수	892	1,361	1,490	—
잠정조치 결정 건수	7,026	8,344	9,678	—
합계	7,918	9,705	11,168	1,625

자료: 대법원

-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요청 건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건수의 합은 매년 1,625건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우편송달에 의한 통지 1건당 단가는 2025년 기준 5,280원이며,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¹⁾
-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잠정조치 청구 기각 및 잠정조치 결정 시 통지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4] 연도별 잠정조치 통지 건수: 2026~2030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잠정조치 청구 기각 및 잠정조치 결정에 따른 통지 건수	14,418	16,043	17,668	19,293	20,918

자료: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기각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억 9,700만원(연평균 9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통지 건수(A)	14,418	16,043	17,668	19,293	20,918	—	—
우편송달 1건당 단가(원, B)	5,386	5,493	5,603	5,715	5,830	—	—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C=A×B)	78	88	99	110	122	497	9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3	1.9	2.0	2.0	2.0	2.0	2.0	2.0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